

품질인증기관 [] 지정신청서
[] 재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·열람 일시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명			
	대표자	사업자등록번호 (생년월일)		
	소재지	전화번호		

설립 목적

설립 연월일

인증업무의 범위

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(제13조의2제1항)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(재지정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(법인만 제출합니다)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.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원본(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

